



Guidelines for Research in Forensic Science

제 1 조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법과학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면서 개인식별 및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과학적 적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면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과학연구라 함은 "법 또는 정책의 집행과 관련하여 활용되는 과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 를 의미한다.
2. 법유전학이라 함은 "법적인 분쟁과 관련하여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얻은 물질에 대해 유전학적 지식을 적용하는 분야" 를 의미한다.
3. 법적 절차라 함은 "법과학적 증거가 이용되는 형사절차, 그리고 개인식별 등과 관련된 민사절차 등 법과학적 증거가 이용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 를 의미한다.
4. "디엔에이"란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 (Deoxyribonucleic acid, DNA)을 말한다.
5. "디엔에이감식시료"란 사람의 혈액, 타액, 모발, 구강점막 등 디엔에이감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6. "디엔에이감식"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닌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 분석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란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집합체로서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9. "개인식별정보"란 디엔에이감식시료 제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0. "개인정보"란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1. "익명화"란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기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일반원칙

- 1) 이 가이드라인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등 국내 관련 법령을 존중하면서 준수되어야 한다.
- 2) 이 가이드라인은 인간유전학에 대한 국제적 규범들 및 개인식별에 대한 국제적 규범들을 존중하면서 준수되어야 한다.
- 3) 이 가이드라인에서 규율하는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서는 아니 되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제공하는 자 등의 인권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4) 디엔에이감식시료 제공자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 5) 디엔에이감식시료 제공자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보호되어야 한다.
- 6) 디엔에이감식시료 제공자와 연구자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7)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제 4 조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획득

- 1) 구속피의자 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획득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수형자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획득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범죄 현장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획득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자발적 제공자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획득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42조와 제43조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본 조 (1)항과 (2)항에 해당하는 피의자나 수형자가 법과학연구에 자신으로부터 유래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자발적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발적 의사 여부에 대한 심사는 당해 피의자나 수형자가 구속 또는 구금되어 있는 기관과는 독립된 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 5 조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 1) 디엔에이감식시료 제공자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디엔에이감식시료 제공자의 자발적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2) 디엔에이감식시료 제공자의 동의의 의사 표시는 서면으로 이루어질 것이 원칙이다. 동의와 관련된 절차 및 서면동의의 내용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3) 서면동의서의 존재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제공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일 뿐 서면동의서가 존재한다는 것이 언제나 디엔에이감식시료 제공자의 유효한 동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디엔에이감식시료 제공자가 동의서나 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 4) 서면동의를 당해 법과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게서 직접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법과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법과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동의절차에 대한 위임을 한 자는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절차를 위임받은 자는 동의절차에 대한 일정한 교육과 정도 관리를 받아야 한다. 본 항의 규정 범위 내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 5)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구속된 피의자이거나 구금된 수형인인 경우에는 동의의 자발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제 6 조

연구관리위원회

법과학연구를 하는 학술단체 및 전문가집단은 법과학연구의 자율적 규율을 위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연구의 정도관리 및 윤리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해설:

본 가이드라인에서 연구관리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한 기구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한 기구에 의하여 연구의 정도관리와 윤리성을 확보할 것인가는 법과학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법과학자들이 스스로 신뢰할만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부적 개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기구들이 법과학 영역에서의 연구관리위원회를 포섭할 것인가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법과학적 결과물이 법적 절차에서 사용된다는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연구관리위원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 7 조

연구자의 정도 관리

- 1) 법과학연구를 수행하고 자는 연구자는 당해 법과학연구에 대한 최신 식견과 기술에 대한 정기적인 정도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정도 관리를 위하여 연구관리위원회에서 교육 및 정도 관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2) 법과학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및 분석 결과가 법적 절차에서 이용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법과학연구자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제공자나 연구 및 분석을 의뢰한 자로부터 독립되어 중립적으로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하여야 하고 과학적으로 타당한 결과만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법과학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은 한편으로는 순수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적 절차에서 사용할 결과물을 생산해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법과학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은 통상적인 과학연구자의 과학적, 윤리적 의무에 더하여 법과학연구가 요구하는 또 다른 과학적, 윤리적 의무를 부과받는다.

법과학연구자들은 최신의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습득하여야 한다. 법과학에 대한 최신 식견과 기술에 대한 습득은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러한 교육은 본 가이드라인 제7조에 규정한 연구관리위원회에서 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법과학적 분석의 결과물이 법적 절차에서 이용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이 점을 숙지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형사절차에서 당사자주의를 채택하는 영미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직권주의적 형사소송체계라고 이해되고 있다. 유죄의 증거가 되는 법과학적 분석의 결과물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획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은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경찰과 검찰의 책임 하에 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과학분석기관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적 지위에서 과학적 분석을 할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이에 반하여 영미의 경우에는 법과학 분석이 의뢰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민사절차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법과학적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예를 들어 친자감별을 위한 법과학적 분석의 경우 이를 의뢰한 자의 이익과 무관하게 과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 8 조

연구의 정도 관리

- 1) 연구관리위원회는 법과학연구의 최신식견을 바탕으로 연구의 정도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연구책임자는 연구관리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연구의 정도관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 9 조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관리

- 1) 디엔에이감식시료는 인간존엄성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 2) 디엔에이감식시료는 오염되지 않으며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 3) 연구책임자는 디엔에이감식시료의 보관을 위한 책임자를 선정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적정한 보관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해설:

디엔에이감식시료는 분석하기에 따라서는 개인의 질병이나 유전적 특성을 알아낼 수 있는 매우 포괄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생물학적 물질이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분석된 숫자나 기호로 나타난 정보 보다는 전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디엔에이감식시료의 보호라고 생각한다. 연구자가 처음에 법과학적 연구의 제한된 목적을 위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획득하였다고 하여도 이후에 오.남용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관리하고 처리함에 있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항상 고려되어야 하며 개인 정보의 유출 등을 통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법과학적 연구의 결과물이 과학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디엔에이감식시료가 다른 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여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디엔에이감식시료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서의 사용은 불가능하다. 연구자는 디엔에이감식시료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 또한 연구자에게 이를 숙지 시켜야 한다.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오.남용을 통한 인간 존엄성의 침해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오염 등에 의하여 동일성이 해하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는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보관하는 것을 책임지는 자를 선정하여 이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관리하는 자는 독립적으로 선정할 수도 있지만 연구자 중에서 선정하여 이를 책임지도록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관리를 책임지는 자로 선정된 자는 과학적, 윤리적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 10 조

디엔에이감식시료의 분석

- 1) 디엔에이감식시료는 연구관리위원회가 검증한 방식에 의하여 분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연구관리위원회가 제안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의 분석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분석방식의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제공자의 동의 및 분석위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설:

디엔에이감식시료의 분석 또한 과학적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방법이 과학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연구관리위원회가 검증을 통하여 결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 11 조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때에는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지체없이 폐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후 폐기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관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폐기하지 아니하고 관리하거나 연구에 사용하는 디엔에이감식시료는 개인정보와는 분리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제 12 조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제공

- 1)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연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디엔에이감식시료는 익명화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연구의 필요상 분석결과와 개인정보가 연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보관하고 있는 원래 기관의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연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 3)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제공에 있어서 제공자의 동의에 대해서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16조를 준용한다.
- 4)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43조의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에 관한 규정은 이 가이드라인에 준용한다.
- 5) 디엔에이감식시료 제공자가 구속된 피의자나 구금되어 있는 수형자인 경우에는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의사의 자발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해설:

본 가이드라인은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한적인 디엔에이감식시료를 타 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먼저 디엔에이감식시료를 타 연구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제공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이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제공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처음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제공받을 때에 타연구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타연구기관에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연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연구관리위원회는 타 연구기관에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디엔에이감식시료 제공자의 유효한 동의가 있었는지를 검토하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를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제 13 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관리

- 1)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는 개인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의 정보 또는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 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와 제10조는 이 가이드라인에 준용된다.

제 14 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법적 절차에의 활용

-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법적 절차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정보의 법적 유용성, 활용범위 및 한계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 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분석한 자는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적 절차에서 증언을 할 수 있다.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분석하는 자는 법적 절차에서의 적절한 증언을 위한 기본 지식을 가지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 15 조

익명화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연구에의 사용

익명화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원래 그 디엔에이감식시료가 획득된 이유 및 절차와 다른 연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연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6 조

기록의 유지와 정보의 공개

- 1) 디엔에이감식시료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관리자는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 2) 디엔에이감식시료 제공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를 받은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연구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판단하여야 한다.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록, 보관 및 정보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19조를 준용한다.